

Global Report

바이오매스 전력 프로젝트 관련 베트남 총리 결정문 개정

1. 개요
2. 제6조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 및 건설
3. 제7조 바이오매스 전력 프로젝트를 전기 시스템에 연결
4. 제11조 바이오매스 전력 프로젝트에서 전기구매에 대한 책임
5. 제14조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에 대한 병입 관세
6. 제16조 관련기관 및 개인의 책임
7. 결론

1. 개요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경제발전과 함께 고속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14년 역대 최고의 해외수주금액을 달성하였으나 국제 금융위기의 도래 및 경쟁력(기술, 노동력 등) 저하로 수주실적이 하강국면에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환경 다변화와 하강국면의 해외수주 극복을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과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등에 따라 동남아 현지 재생연료(왕겨, 야자 등)를 활용한 바이오매스플랜트 등의 해외시장 진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중 베트남은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로 현지 재생연료가 풍부할뿐 아니라, 지난 20년 4월 발표된 총리 결정문을 통해 바이오매스 플랜트로 생산되는 전력단가를 상향조정 하여 국내 바이오매스 플랜트 관련 EPC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기존 총리결정문 '2014/QD-TTg(2014.3.24.)'에서 '2020/QD-TTg(2020.4.25.)'로 바이오매스 전력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메커니즘 수정보완에 따른 개정된 사항 중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시 고려해야할 조항들을 발췌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2. 제6조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 및 건설

1. 바이오매스 전력 프로젝트의 개발은 전력과 일치해야 한다. “이하 생략”
2.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의 주요장비는 현재 기술을 충족해야 한다. “이하 생략”
3.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 및 건설은 법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하 생략”

3. 제7조 바이오매스 전력 프로젝트를 전기 시스템에 연결

1. 전기판매자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연결지점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제11조 바이오매스 전력 프로젝트에서 전기구매에 대한 책임

1. 전기구매자는 생성된 모든 전력을 구매할 책임이 있다. “이하 생략”
2. 구매자와 판매자가 표준화된 권한을 적용한다.
3. 전력구매 기간은 상업운행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5. 제14조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에 대한 병입 관세(부가세 미포함)

1.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프로젝트의 경우: 1,634 VND/kWh(당초 1,220VND/kWh)
2.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외: 1,968VND/kWh
3. ~6. “생략”

6. 제16조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책임

1. 산업통상부 “이하 생략”
2. 지방 및 중앙행정도시의 인민위원회 “이하 생략”
3. 베트남 전기 “이하 생략”
4. 전력판매자 “이하 생략”

7. 결론

베트남 총리 결정문 Decision-08-2020-QD-TTg('20.4.25) 개정에 따라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의 전기비용이 '14년 1,220VND/kWh(64원)에서 1,634 VND/kWh(한화 86원) 상향되고,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외 전기비용이 1,968VND/kWh(102원)으로 확정되어 상향된 전기가격을 고려시 B/C2.0 이상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바이오매스 플랜트 시장 진출에 따른 기대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력단가(원/kWh) 105원 기준: B/C 2.98, IRR 18.34%

<원문제목> Decision_08_2020_QD_-TTg_Biomass

<원문출처>

http://vepg.vn/wp-content/uploads/2020/03/Decision_08_2020_QD-TTg_Biomass_FIT_EN.pdf